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3.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3월 10일

나. 발의자: 전승관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2025년 3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3. 2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전승관 의원)

가. 제안이유

- 군복무 중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가입대상(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복무 청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안의 핵심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대하여 규정 함
 - 안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는 상해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안 제5조(가입대상)는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 또는 소집된 상근예비역으로 규정함

- 검토 결과
 - 국방부에서 발간한 ‘2024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부터 10년간 군 복무 중 부상 등으로 장애보상금을 수령한 인원은 8,095명임.
 -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군 복무 중 자살, 의사, 차량사고 등으로 사망한 군인은 421명이며, 2023년 기준 군병원 외래 및 입원 건수는 각각 1,376,854건, 19,3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국방부에서는 「군인 재해보상법」을 근거로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으나, 현역병은 장애·사망보상금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 금융기관 부담으로 자동가입되는 ‘병(兵)상해보험’ 또한 상해사망·후유장해인 경우에만 지원하여 보장범위가 좁으며, 영등포구에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구민생활안전보험’은 보장범위가 넓으나 보장금액이 적다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현재 국가 및 영등포구에서 지원 중인 보상을 보완하고 군복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과 그 가족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방의 의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빌의된 안전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2호(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실제 서울시 7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총 32개 자치 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 또한, 가입대상으로 현역병(兵)에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副士官)”을 포함한 사유를 살펴보면, 「군인사법 시행령」 제43조(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에 따라 현역병인 병장이 전사·순직 등으로 인해 하사(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로 진급하는 경우도 포함하기 위함이며, 해당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살이 군인사망의 주요원인(5년간 사망원인 1위로, 약 76%에 해당)이 되는 만큼 집행기관은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을 계약할 때 정신질환 관련 보장도 포함하는 것과 더불어 군복무 특성을 고려한 보험 설계를 통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참고로, 본 조례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상해보험은 「구민생활안전보험」, 사보험 등 타 보험과 중복하여 지원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 |
|------------|-----|
| 의 안 번 호 | 496 |
|------------|-----|

발의연월일: 2025. 3. .

발의자: 전승관, 유승용, 남완현
이성수, 이규선, 김지연
이예찬, 정선희 의원(8인)

1. 제안이유

군복무 중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상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가입대상(안 제5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병역법」,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영등포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구가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 구청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가입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제6조(준용)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

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